

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

제정 : 2021년 04월 22일

개정 : 2023년 03월 21일

개정 : 0000년 00월 00일



(사)한국연예제작자협회

Korea Entertainment Producers' Association

사.단.법.인. 한.국.연.예.제.작.자.협.회

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관리수수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(이하 “협회” 라 한다)가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(이하 “보상금” 이라 한다)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관리수수료(이하 “관리수수료” 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리수수료)

-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보상금의 **24%** 이내로 한다. 단, 상호관리계약에 의거 외국에서 징수하여 국내에 분배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동 금액의 5% 범위 내에서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.
- ② 협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관리수수료율을 매년 보상금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하여 보상금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저작권법 제106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통합징수주체에게 협회가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2에 따르며, 협회의 관리수수료에서 공제한다.

제3조(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) 제2조에 따라 결정한 관리수수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 징수 시 60%, 분배 시 40%로 각각 구분하여 공제한다. 다만, 분배되지 아니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분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개정)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(2021.04.22.)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)

- ① 제3조에 따른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및 공제율은 2021년 04월 01일 이후 본 협회에서 징수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.
- ②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징수시 관리수수료 50%를 선 공제한 미분배 보상금을 본 협회에서 분배하는 경우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의 관리수수료에 따라 분배시 50%를 공제 한다.
- ③ 전 2항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승인받은 관리수수료 및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를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(2023.03.21.)로부터 3년간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(0000.00.00.)로부터 시행한다.